

보도자료는 2018. 5. 8. 배포 이후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공보담당관 자장겸 사 강남일
전화 02-530-3222
팩스 02-530-3219

보도자료

2018. 5. 8.(화)

자료문의 : 형사부장실
전화번호 : 02-530-3000
주책임자 : 형사부장 박순철,
검사 정경진

제 목

허위 고소나 항고 남용하면 처벌된다

- 최근 3개월 동안 무고사범 총 22건 적발 -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순철)는, 무분별한 항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원처분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항고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고 혐의 총 22건을 적발하였음
- 원처분청에 잘못된 고소를 하고 다시 항고까지 하여 피고소인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국가사법기능을 저해시킨 무고사범에 대하여 처벌 필요

1 무고 사범 단속 개요

-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항고사건(抗告事件)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고혐의가 있는 총 22건을 적발, 이 중 15건을 기소하고, 7건을 수사 중에 있음
- 금번 수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무고혐의가 확인된 총 22건 중 15건에 대하여는 고검에서 고검 복심수사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하여 경정(更正)하였고, 나머지 7건은 원처분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려서 수사하게 한 것임

- 항고(抗告)는 고소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제수단인데, 원처분청에 잘못된 고소를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도 항고까지 함으로써 피고소인을 오랜 기간동안 고통받게 하고, 국가사법기능을 저해시킨 항고사건의 무고사범에 대하여는 처벌할 필요가 있음

2 대표적인 적발 사례

- 강제추행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3명을 3개의 검찰청에 각각 위증죄로 고소·항고한 사안에 대하여 무고혐의를 구증하여 각 불구속 구공판(별첨 ①번 사례 참조)
- 10억원 사기 사건에서 차용증 등 증거를 통해 고소인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한 후 사기죄의 공소시효 만료 1일 전에 무고 혐의를 구증하여 불구속 구공판(별첨 ②번 사례 참조)
-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고소한 항고인에 대해 새로운 목격자를 확보, 진술을 받아서 무고 혐의를 구증하여 구약식 청구(별첨 ③번 사례 참조)
-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을 형사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자, 새로운 사유를 만들어 또 다시 허위 고소한 사실을 밝혀 불구속 구공판(별첨 ④번 사례 참조)
- 항고인이 전처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전처가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전처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고로 불구속 구공판(별첨 ⑤번 사례 참조)

- 동거하던 여성들을 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 무고를 일삼고 이를 도와주지 않은 직원들을 해고한 피의자를 직접 구속하여 구공판 (별첨 6번 사례 참조)

3 향후 계획

- 서울고등검찰청은 고검 복심수사의 일환으로 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고사범을 적극 적발하여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주요 사례

1 강제추행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3명을 각각 위증죄로 무고한 사례

- 여성산악회원과 술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유죄확정 판결까지 받은 항고인 乙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3명에 대하여 2017. 6.경 서울남부, 서울서부, 서울동부 등 3개의 검찰청에 위증죄로 분산 고소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모두 항고하였는데,
 - 서울고검은 하나의 항고사건이었다면 무고혐의를 확인이 어려웠을 텐데, 위 항고사건을 모두 종합 분석한 후 무고혐의를 확인하여 각 처분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함
- 원처분청들은 보완 수사를 통하여 乙이 '2016. 3.경부터 5.경까지 성추행 피해자인 A와 목격자인 B 등이 각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실제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추행당하였다거나, 추행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목격하였다고 각 허위 증언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2017. 6.경에 집중적으로 남발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항고인이 고소한 건 모두에 대해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음
- 이후 서울고검은 각 처분청에 무고인지 후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 및 법원에 동일 사건임을 설명하여 한 개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협조를 받아 현재 병합하여 재판 중에 있음

② 시효완성 1일을 남겨두고 무고를 입증하여 기소한 사례

- 이 건은 丙이 2017. 11. 20. 서울남부지검에 A가 부동산 부지 1만평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임
- 그러나 종전 수사시 누락했던 대질 수사를 실시하고, 丙이 제출을 지연한 차용증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2008.경 A와 농장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하고 1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시효 만료 1일 전에 서울고검에서 무고를 입증, 기소함

③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무고한 사례

-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는 丁(76세)은 2017. 2. 17. 17:00경 주점에서 피해자인 주점 주인과 막걸리값 계산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A로부터 제지를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A를 폭행
- 그럼에도 자신이 고소당할 것 같아 2017. 6. 15.경 구로경찰서에서 먼저 A를 상대로 'A가 丁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도망가는 丁을 뒤쫓아오며 계속 목을 졸랐다'고 무고하였으나 112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목격자를 확인, 추가 수사하여 실체관계를 규명하여 서울고검에서 무고죄로 인지하여 기소함

④ 무고죄로 처벌받자 또 다시 허위 증언하였다고 무고한 사례

- 戊(84세)은 2015. 7. 22. 상속으로 공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였다는 사유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위협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2015. 10. 20. A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戊가 무고죄로 처벌받음

- 그러자 戊은 어떻게든 A를 처벌받게 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또 다시 2017. 5. 8. 동해 경찰서에 'A가 사실은 단독으로 했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중인 재물손괴 형사재판에서 戊와 협업을 하였습니다 라고 허위 증언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고검에서 乙의 이전 전력 등을 토대로 무고사실을 밝혀내어 불구속 구공판함

⑤ 선생님인 피고인의 전처를 칼로 위협하고 학교에 찾아가 난동을 부려 형사처벌된 전남편이 앙심을 품고 전처를 무고한 사례

- 己(79세)은 2001년. 10.경 전처인 피해자 A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칼로 A의 얼굴을 수회 베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2013. 11.경 또 다시 A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바람나 집을 나갔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 己은 교도소 출소 후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1. 26.경 서울서부지검에 'A가 법정에서 자신의 얼굴에 흉터가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또 다시 고소하였음.
- 부부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己의 재범위험성, A의 피해 정도, 무고에 대한 엄단 필요 등 처벌 필요성이 커 서울고검에서 무고로 인지하여 불구속 구공판함

⑥ 동거하던 여성들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무고를 일삼은 사례

- 甲(80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 택시회사 및 수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로,
 - 2017. 7.부터 2017. 11.까지, 2010. 10.에 만나 2017. 4.부터 동거한 A(여, 49세)를 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 사실은 甲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재물을 파손하였음에도 A가 무단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와 퇴거불응하고 집안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총 6회에 걸쳐 허위 고소하고
 - 2015. 5.경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만나 사귀었던 B(여, 48세)가 '나이가 60세이고 배우자가 없다고 소개받은 甲이 실제로는 73세이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甲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2015. 10.부터 2015. 12.까지 총 3회에 걸쳐 'B가 결혼중개업소 사장, 직원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자신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으로 허위 고소함
- 또한 甲은 A에 대한 형사고소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甲의 신체가 매우 건강함에도 '누가 부축하여 주지 않으면 혼자 걸기도 힘들고, A가 무단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손괴한다'는 등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17. 9.부터 2018. 1.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D, E, F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D, E를 해고하였음
- 서울 고검은 위 사실을 입증하고 항고인이 고령임에도 구속하여 기소함